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

제출년월일 : 1997. 2. 28
제출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1995. 8. 4)으로 인한 추가신설된 용어를 개정하고 폐기물배출요령안내 방법, 분리보관종류확대, 봉투색상 선정 방법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폐기물의 종류에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사업장계 생활 폐기물, 생활폐기물”의 용어를 신설 (안 제2조)

나. 폐기물 분리보관 종류를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을 추가하여 세분화함 (안 제4조)

다. 쓰레기 배출자의 쓰레기 감량배출을 의무화 시킴 (안 제6조)

라. 쓰레기 배출요령의 주민홍보방법을 안내문 배포하는 방법으로 함 (안 제8조)

마. 봉투의 색상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제작시 상업 광고 게재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3.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조, 제15조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건축,토목공사(철거·보수공사 포함)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의한 사업장폐기물중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제1항중 “재활용가능폐기물과 기타폐기물”을 “재활용가능폐기물,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폐기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배출폐기물

같은조제2항중 “배출하여야 한다”를 “스스로 감량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을 “주민에게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법 제17조”를 “법 제26조”로 하고, “법 제19조”를 “법 제28조, 법 제29조”로 한다.

제9조중 제목 “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 등을 “쓰레기봉투의 용도 등”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중 “봉투의 규격, 사양등”을 “봉투의 규격, 색상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중 쓰레기봉투판매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의 공급은 동사무소 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금융기관등을 통해 공급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에 위탁공급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중 “법 제13조제4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제2호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을 “제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대형폐기물의”로 한다.

제17조중 제목 “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을 “생활폐기물의 수거능력보강”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중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를 “개선·확충·보강해 나가야 한다”로 하며, 같은조제2항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법 제17조”를 “법 제2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언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폐기물”이라 함은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시설)	3.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건축, 토목공사(철거·보수 공사 포함)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5.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외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재활용가능폐기물과 기타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의분리보관) ①----- ----- <u>재활용가능폐기물, 가연성폐기물,</u> <u>불연성폐기물</u> ----- -----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뮤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3 (생략)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의 폐기물 5~6 (생략) ② 배출자는 제1항 각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의배출방법) ①----- ----- ----- ----- ----- ----- ----- ----- ----- ----- ----- ----- 1~3 (현행과 같음)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배출폐기물 5~6 (현행과 같음) ② ----- ----- ----- <u>스스로 감량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u>
제8조(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p> <p>①~⑤ (생략)</p> <p>(신설)</p>	<p>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p> <p>①~⑤(현행과 같음).</p> <p>⑥ <u>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중 쓰레기봉</u> <u>투판매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의 공급</u> <u>은 동사무소 또는 구청장이 따로 지</u> <u>정한 금융기관등을 통해 공급할 수</u> <u>있으며, 금융기관 등에 위탁공급시</u> <u>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4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생략)</p> <p>2. <u>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u> <u>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3</u> <u>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u></p> <p>②(생략)</p>	<p>제13조(폐기물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법 제13조제3항-----</p> <p>-----</p> <p>-----</p> <p>-----</p> <p>1.(현행과 같음)</p> <p>2.<u>제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대형 폐</u> <u>기물의-----</u></p> <p>-----</p> <p>-----</p> <p>②(현행과 같음)</p>
<p>제17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p> <p>①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p> <p>②(생략)</p>	<p>제17조(생활폐기물의 수거능력보강)</p> <p>①-----</p> <p>-----</p> <p>-----</p> <p><u>개선 · 확충 · 보강해 나가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③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u>제1항과 제2항</u>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p>	<p>③----- -----<u>제1항</u>----- ----- ----- -----.</p>
<p>제18조(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 등)</p> <p>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이하 “처리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u>법 제17조</u>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8조(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 등)</p> <p>①----- ----- ----- ----- ----- ----- ----- <u>법 제26조</u> ----- ----- -----.</p>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